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34
----------	-----

제출년월일 : 2015. 10.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 수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사항 및 호선규정 명시

○ 조례안 제8조제1항 수정

- 간사 임명권 제약규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5. 09. 23. ~ 2015. 10. 13.) 결과 : 제출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를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해당 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7.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제2항 중 “부군수가 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지명한다.

제4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 소속 공무원

제5조제2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담당주사로 한다”를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서 정한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1. (생 략)</p> <p>2. <u>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u></p> <p>3. <u>동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u></p> <p>4. <u>동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u></p>	<p><u>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u></p> <p>제1조(목적) -----<u>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u> -----</p> <p>-----</p> <p>-----</p> <p>-----.</p> <p>제3조(기능) -----</p> <p>-----.</p> <p>1. (현행과 같음)</p> <p>2. <u>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u></p> <p>3. <u>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u></p> <p>4. <u>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해당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u></p>

5.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신 설>

제4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군수가 위촉 지명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으로 한다.

1. 2. (생략)

3. 군소속 공무원중 주민생활지원과장 및 분청내 각 실과장으로 직제 순위에 의한 4인과 평창군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생략)

5. 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7.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지명한다.

1. 2. (현행과 같음)

3. 군 소속 공무원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 (생략)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생략)

② -----
-----총괄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간사) ① -----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 성 자	주민생활지원과장 남 동 선
연 락 처	(033)330-2150

관계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⑤ ~ ⑥ 생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8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① 생략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⑤ 생략

제29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① 생략

② 시·군·구에 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군·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군·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5.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제37조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7.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8.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3조(간사)

- ①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각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② 생략